

2)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성폭력 추방 주간(안 제3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 행사, 심포지엄의 개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다.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안 제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키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 등이 그 밖의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제7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 령

●**법무부령 제727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2조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 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5.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4조(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은 후 확정일자인을 다시 찍어야 한다.

③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을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 등) 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는 청구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등부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장수 4장마다 100원씩을 더하여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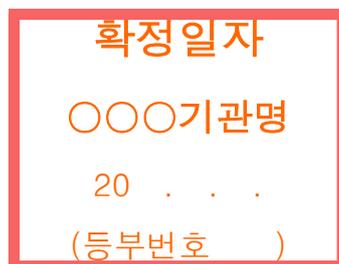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50mm×30mm [재질:고무]

◇제정이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절차를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안 제3조)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및 확정일자부의 작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 등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161호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관할관청”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접수부 등)”을 “(출원접수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접수부”를 “출원접수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접수부”를 “출원접수부”로, “광업출원카드”를 “광업출원 카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업권”을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서류를”을 “주민등록표 초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